



## 공공수어통역의 범위와 공공성 기준에 관한 연구

이 현 화\* · 이 미 혜\*\*

### A Study on the Scope and Standards of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Lee, Hyun-hwa\* · Lee, Mi-hye\*\*

#### ABSTRACT

**[Purpose]** Following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hich started in 2019, has reached 4 years a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expand.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hat have been approached in terms of public languages so far. Considering the impact of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on deaf society, the scope of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publicity standards need to be presented. **[Method]** By focusing on previous studies relating to the public provision of sign language this study suggests its scope and standards are by considering the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public language, public language standards, and diagnostic criteria. **[Results]**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an be defined a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sign language translation of public information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deaf people”. The scope of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s presented by theme.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affiliated public institutions provid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sign language translation of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to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citizen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broadcasts are interpreted or translated in sign language, in the field of education classes in which deaf students participate as well as materials used in educational activities are interpreted in sign language, in the field of academics conferences, academic journals, and related materials are translated in sign language, in the field of disability, there ar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s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pproved by associations and related organizations. Also, all deaf people related materials are translated in sign language. The standards of publicity were presented as ‘accuracy’ and ‘communication’. In presenting specific features, use of space in Korean sign language, non-manual signals, etc. were reflected.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hich started in Korean and was produced in Korean Sign Language throug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ere also considered. ‘Visual convenience’ as an item of appropriateness is related to institutions that provide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use of language which is perceived and communicated visually by the deaf. **[Conclusion]** In order to apply publicity standards to the provision of sign language, further research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to clarify the use of Korean sign language in public settings. Additional studies on various aspects of public sign language are necessary so that the discussion on securing information access rights for the deaf community can be revitalized.

**Key Words** : Sign Language, Deaf,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tandards of publicity

\* 제 1저자,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학예연구사(lhh1127@korea.kr)

Researcher, Korean Sign Language and Korean Braille Promo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강사(goodlife66@hanmail.net)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Korean Sign Language and Korean Braille Promo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가 우리나라 농인의 공용어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공공수어통역이라고 명명하였다. 공공수어통역의 시행 시기가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대한민국 정부 브리핑이 매일 진행됨에 따라 2019년은 13건(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은 764건(문화체육관광부, 2021)의 공공수어통역이 제공되었다.

공공수어통역의 시작은 우리 사회에 점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공공수어통역의 지속적인 제공을 통해 수어통역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효과와 함께 지방정부 등에서도 공공수어통역 형태의 정책이 시행되는 변화를 이끌었다. 이는 그동안 복지 서비스로 인식되었던 수어통역이 농인의 언어적 권리라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수어통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통역과는 다른 측면을 갖게 된다. 이는 명칭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통역이기 때문이다.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서은아(2011, p. 91)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공공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가치”라고 밝히고 있다.

공공수어통역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공의 성격이 강한 수어통역은 방송 수어통역\*\*\*\*이라고 볼 수 있다. 방송 언어와 관련하여 서은아(2011)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공공 언어의 속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방송 수어 통역은 불특정 다수의 농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방송 수어통역은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화면이 작아서 농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농사회에서 제기하는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수어통역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수어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신청 등의 절차가 있어 이용하는 농인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에 비해 공공수어통역은 대부분 브리

\*\*\* 아직까지 ‘수화’와 ‘수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한국수화언어법’에서 공식 용어로 ‘수어’를 채택하였기에 본 고에서도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고 문헌에서 직접 인용한 내용에 ‘수화’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2019.1.30.)에서는 ‘한국수어방송’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본 고에서는 ‘방송 수어통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평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통역하고 화면에서 수어통역사를 크게 송출하고 있어 농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였다.

공공수어통역 시행 초기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통역사마다 사용하는 전문용어의 수어가 각기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농인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이것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공공수어통역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19라는 생소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역 오류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수어통역사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신어 또는 의학 전문용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관련 발표의 경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코호트 격리’, ‘방역 수칙’ 등 의료 전문용어와 코로나19 관련 신어들이 많아 통역의 어려움이 훨씬 가중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공수어통역은 주체, 대상, 내용 등에 있어서 기존의 수어통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 통역은 농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보 접근성, 공공성의 기준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립국어원이 공공수어통역 품질을 점검하고 있지만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현재까지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공공수어통역이 공공언어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등 관련된 내용은 제시된 바 없다. 민은주(2013)는 수어통역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어통역을 공공성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수어통역을 통한 농인들의 정보 접근권 확보를 위해 공공수어통역을 공공언어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는 공공수어통역의 확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공공수어통역의 공공성 기준은 공공수어통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공공수어통역의 범위와 공공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언어 측면에서 한국수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공공수어통역을 통한 농인의 정보 접근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제공하고 공공수어통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수어통역사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 질문

공공수어통역의 범위와 공공언어로서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수어통역은 공공언어에 해당하는가?

둘째, 공공수어통역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가?

셋째, 공공수어통역의 공공성 기준은 무엇인가?

## II. 공공언어로서의 공공수어통역

공공수어통역이 공공언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수어통역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기연(2021)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공공언어’라는 용어는 국어기본법(2005)의 시행과 함께 등장하였고, 2009년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과의 전신인 ‘공공언어지원단’이 설치되면서 공공언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본격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언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공언어’에 대한 정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민현식 외(2010, p. 5)는 공공언어와 관련하여 사용 맥락의 장과 주체, 대상, 생산 목적, 양식을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에서 해당 업무자가 사회 구성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한 문어 텍스트”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에서 민현식(2020, p. 45)은 공공언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공적으로 발신하는 언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공공언어를 국가기관 언어의 중심으로 다루면서 역사 언어, 문화 언어를 중심으로 교육언어, 매체언어, 기업 언어 등도 주요 공공언어로 보는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조태린(2010, p. 383)은 공공언어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적 영역의 언어를 포함한 것은 사적 영역의 언어가 다른 상황에서 다른 개인에게 재생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언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지용·김미선(2017, p. 108)은 공공언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 업무자가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산한 공문서에 사용하는 언어이다. 즉 언어 사용의 목적, 주체, 대상, 상황에 대한 내용에 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공공언어의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권미영·신언호(2019, p. 2-3)는 공공언어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언어의 대상인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며 “‘공공’ 즉 ‘국가나 사회 구성원

에게 두루 관계되는 '언어' 라고 서술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 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박재희(2020)는 공공언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결론지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언어에 대한 정의는 주체와 대상, 목적, 내용 등을 중심으로 때로는 광범위하게 때로는 협소하게 정의되고 있다. 다만 ‘공공의 목적’ 을 가진다는 것과 ‘다수의 사회 구성원’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어는 문자체계가 없는 언어이므로 공공언어를 문어 텍스트로 한정된 개념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설정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의거하여 공공수어통역의 목적과 주체, 대상을 살펴본다면 공공수어통역이 공공언어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공수어통역의 목적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는 공공의 목적에서 출발하여 농인들로 하여금 일반 국민들과 동등한 정보를 향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수어통역의 주체는 제공기관 또는 수어통역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수어통역에서 다루는 원문의 정보는 수어통역사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다. 수어통역사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주체는 수어통역사가 아니라 원문을 작성하는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된다. 그러나 원문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표현으로 통역할 수 있으므로 원문에 대한 공공성 평가와 별개로 공공수어통역에 대한 공공성 진단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공수어통역의 대상은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다수의 농인들이다. 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 공공수어통역은 공공언어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 Ⅲ. 공공수어통역의 정의 및 범위

#### 1. 공공수어통역의 정의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공수어통역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공공언어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공수어통역을 정의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정보의 수어통역 및 수어번역’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수어통역과 수어번역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공공언어에 속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조태린(2010)은 공공언어는 기본적으로 공용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2016)에서는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어를 1차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2차적으로 생성된 수어통역과 수어번역이 공공언어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통역 및 번역은 두 언어 사이에서 단어 대 단어의 치환을 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언어에는 문화적 해석, 신념, 가치 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수어통역도 한국어로 출발하는 원문의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수어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수어통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통역 및 번역될 수 있어 공공언어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 2. 공공수어통역의 범위

공공수어통역도 공공언어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를 제시하기 위해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언어의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현식 외(2010)는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목적으로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공공언어의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언어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표 1>의 공공언어 종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된 경향이 강하다.

<Table 1> Kinds of the Public Languages in a Broad Sense

Production Agent	Subject	Type			
		Literary Language		Colloquial Language	
Public Institutions	For public (對民)	1	Government document, Civil complaint form, Press release, Decree, Sentencing, Bulletin, Guidance note, Explanatory note, Promotional note, etc.	2	Policy briefing, Public statement, Telephone guidance, etc.
Private Organization Private Enterprise Public Figure		3	Article (Newspapers & Internet), Terms & Conditions of Bank, Insurance, Securities, etc., Handbook, User's guide, Promotional poster, Advertising description, Street signboard, Banner, Script for a performance, Caption, etc.	4	Broadcasting language, Terms and Conditions or Instructions for use, Lines of performance, etc.
National Institution Public Institution	For government (對官)	5	Internal document, Technical report, etc.	6	Reports for national affairs, Answers in the National Assembly, etc.

Source : Min, H. S., et al., 2010, pp. 3-4.

조태린(2010)은 공공언어의 영역과 유형, 출현 형식을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조태린이 주장한 공공영역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 이유는 공공언어의 사용 대상을 어떠한 상황이 다수에게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조태린은 제시한 유형 7개 중에서 유형 1, 2가 가장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Table 2> Domains, Types, and Forms of Appearance of the Public Languages

Domain	Category	Appearance Form
↑ Official	Language used for activities related to public matters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nation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Category 1]	Law, Official document, Official gazette, Proclamation, Sentencing, Order, Notice, Press release, Guidance note, Bulletin, Road sign, Civil complaint form, Certificate, etc.
	↓ Personal	Language used for educational activities at schools of all levels [Category 2]
↑ Official	Language used in convey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the public via newspapers, broadcasting, the Internet, etc. [Category 3]	Article/Report, Lead editorial, Column, Knowledge/Refinement, etc.
	Language used for economic activities of the private domains such as contracts, investments, sales, purchases, advertisements, etc. [Category 4]	Contract, Terms & Conditions, Quotation, Receipt, Product description, User's Guide, Advertising and promotional items, etc.
	Language used for academic, R&D, and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specialized domains of academia and industry [Category 5]	Lecture, Presentation, Discussion, Conference, Papers, Specialized publication, etc.
↓ Personal	Language used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r the public through broadcasting, performances, etc. [Category 6]	Drama, Comedy, Entertainment /Recreation, Movie, Play, Music, etc.
	Language used for personal expressive activities in virtual spaces such as the Internet, mobile phones, etc. [Category 7]	Personal homepage, Blog, Comment, Twitter, etc.

Source : Cho, T. R., 2010, p. 384.

민현식(2020)은 공공언어의 범위가 좁은 의미의 공공언어로 볼 것인가,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는 공공언어를 역사적으로 경학 언어, 통치 언어, 역사 언어, 문화 언어로 나눌 수 있으나 현대의 공공언어는 개념과 영역이 광범위하여 유형화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교육 언어, 법치 언어, 매체 언어, 기업 언어, 문화 언어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누리집 사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이 공공언어를 보게 된 점은 현대사회에서 시민이 알아야 할 공공언어의 범위가 시대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에게 공공수어통역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민현식 외(2010)가 제시한 공공언어의 범위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생산 주체가 국가기관, 공공기관인 공공언어 중 일부 종류를 준용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조태린(2010)이 제시한 공공언어의 범위는 사적인 영역도 포함하고 있어 공공수어통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로 포함한다는 것은 공적 차원에서 관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2>의 개인적 표현 활동에 해당하는 유형 7을 제외하고 유형 1~6 중에서 일부 출현 형식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고려하여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를 생산 주체, 범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3>에서 제시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0)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준용한다.

<Table 3> The Scope of the Korean Sign Language(KSL) Interpretation for Public

Production Entity	Scope	Category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the KSL for the information openly provided to an unspecified number of citizens among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public institutions.	Statement to the people, Policy announcement, Homepage, Greetings from the Head of the Institution, Press conference, Speech, Notice, Statutes, Publications for election, etc.
Affiliated public institutions	KSL interpretation of the academic conference hos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KSL translation of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translation of materials in the KSL	Academic conference, Major Korean language materials & KSL materials of Korea, etc.
Broadcasting industry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the KSL that are provided in the broadcast	Broadcasting program, Debate for presidential candidates,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etc.
Field of education	KSL interpretation for deaf students <sup>*****</sup> and KSL translation of materials used in educational activities	Lesson, Textbook, Educational material, Examination question, etc.
Field of academics	KSL interpretation at an academic conference, KSL translation of academic journals and related materials	Academic conference, Academic journal, Specialized publication, etc.
Field of disability	KSL interpretation at events such as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disabled that were approved by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KSL translation of materials related to the deaf	Major event, Public hearing, Seminar, Materials related to the deaf, etc.

\*\*\*\*\* 일반적으로는 ‘청각장애 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본 고에서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농학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는 지위를 가졌으므로 <표 3>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수어통역 및 수어 번역을 공공수어통역으로 정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성 기준에 의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정부, 지방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어로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국립국어원은 수어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수어통역에 대한 책무성이 다른 기관보다 더 요구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수어통역,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주요 한국어 자료를 한국수어 번역 또는 한국수어로 생산되는 자료를 한국어 번역 형태로 제공하는 것 등은 공공성 기준을 더욱 준수할 필요가 있다.

방송 수어통역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3호)’에 의거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방송 수어통역이 의무화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방송에서 다루는 정보들이 농인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수어통역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칠관·윤병천(2011)은 농인들이 영상매체인 TV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농인들의 방송을 통한 정보 접근 요구는 높은 반면에 방송 수어통역의 품질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역의 질에 더해 공공성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 농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통합교육을 받거나 농학교에 재학중인 농학생 모두를 고려하였다. 농학교 또는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언어와 정체성을 확립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 학습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학생이 참여한 수업에 제공되는 수어통역, 교육 자료 등의 수어 번역을 공공수어통역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학계’는 학술대회의 수어통역과 학술지 및 관련 자료의 수어번역을 포함하였으며, ‘장애계’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장애 영역에서 공공성이 높다고 보아 주요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어통역과 농인과 관련된 자료의 수어번역을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농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 복지 정책의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인의 일상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민현식(2020)이 주장한 대로 공공언어의 범위가 시대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확대되므로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도 더 넓은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 주체별로 수어통역과 수어번역 두가지 형태를 제시한 것은 농인들이 한국수화언어법의 대상자인 한편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 장도 제공이 되어야 하며 수어번역이 그러한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IV. 공공수어통역의 공공성 기준

본고는 공공수어통역을 공공언어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공수어통역이 공공언어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신명선·강보선·이기연(2016)은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모범성’과 ‘대중성’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모범성은 규범에 대한 준수, 대중성은 쉬운 언어 사용의 강조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떤 언어 사용이 모범적이며 대중적인지를 명료화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권미영·신언호(2019)와 민현식 외(2010)는 공공언어의 요건을 ‘정확성’과 ‘소통성’으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신명선·강보선·이기연(2016)이 제시한 ‘모범성’은 권미영·신언호(2019), 민현식 외(2010)가 제시한 ‘정확성’과, ‘대중성’은 ‘소통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민현식 외(2010)는 만족도 조사와 개선 요구도 조사를 병행하여 설문 문항을 체계화하고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표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진단 기준은 <표 4>와 같다.

<Table 4> Diagnostic Criteria for the Public Languages

Domain	Factor	Item
Accuracy (General criteria)	Accuracy of notation	Comply with the Korean spelling and standard language rules.
		Follow the spacing accurately.
		Comply with the loanword notation and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ccuracy of expression	Choose the vocabulary properly.
		Express the sentences to meet the grammar.
		Configure the paragraphs in a neatly-organized form.
Communication (Weighted criteria)	Publicness (Producer-oriented)	Equip the quality as a public language.
		Refrain from overbearing and authoritative expressions.
		Refrain from using discriminatory expressions (gender, region, race, disabilities, etc).
	Informativeness (Text-oriented)	Presents information in an appropriate format.
		Presents an appropriate amount of information.
		Arrange information properly.
	Easiness (Recipient-oriented)	Write the sentences in proper length.
		Use easy and familiar words and tones.
		Write the sentences taking into account visual convenience.

Source : Min, H. S., et al., 2010, p. 455.

<표 4>의 기준은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텍스트로 표현되는 공공언어에 더 적합한 기준이기 때문에 본 고에서 논하는 공공수어통역에 적용할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

공공수어통역이 대부분 방송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고려하여 방송언어의 공공성과 관련한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김한샘(2011)은 방송언어의 공공성을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은아(2011)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방송언어의 공공성 기준을 폭넓게 고찰하면서 ‘규범성’, ‘적절성’, ‘용이성’으로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서은아가 제시한 ‘적절성’과 ‘용이성’은 공공언어 사용에 있어서 삼가야 할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서은아(2011)는 불특정 다수의 언어 습관과 가치 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파급력 때문에 방송 언어가 공공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수어통역 역시 농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5> The Standards for Publicity of Broadcasting Language

Criteria	Definition	Evaluation Factor
Normativity	An expression that satisfies linguistic norms and grammar	Has the standard pronunciation accurately complied? Was the standard language used? Were the grammatically accurate expressions used? Was the appropriate vocabulary used?
Appropriateness	An expression that considers a situation	Are the discriminatory expressions refrained from? Are the suggestive expressions refrained from? Are the violent expressions refrained from? Are the vulgar expressions refrained from?
Easiness	An easily understandable expression	Are the difficult loanwords or the foreign languages refrained from using? Are the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refrained from using? Are the newly-coined words, buzzwords, and professional words, which are difficult to understand, refrained from using?

Source : Seo, E. A., 2011, p. 100.

공공수어통역의 공공성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공공언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어떤 것들이 제기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태린(2010)은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공공언어의 문제를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언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쉽고 정확한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다른 나라의 공공언어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이현주(2020)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쉬운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이 전개되었으며 프랑스 역시 2001년에 ‘공공언어 단순화를 위한 방향성 위원회’를 발족하며 공공언어의 목표를 ‘품질’, ‘이해 가능성’, ‘명료성’으로 규정한 바 있다. 미국은 2010년에 ‘쉽게 쓰기 법(Plain Writing Act)’이 제정되었다. 공공수어 통역에서도 쉽고 정확한 언어 사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공공수어통역의 공공성 기준을 <표 6>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6> The Standards for Publicness of the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riteria	Factor	Item
Accuracy	Accuracy of expression	Accurately pronounce the forms of KSL vocabulary, fingerspelling.
		Use the KSL words that are common in deaf society.
		Use a pause properly.
	Accuracy in grammar	Convey the meaning accurately through the utilization of space.
Convey the meaning accurately using the non-manual signals appropriately.		
Communication	Publicness	Use the KSL.
		Refrain from using foreign sign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ign.
		Refrain from using discriminatory expressions (gender, region, race, disabilities, etc.).
		Avoid missing important information.
	Appropriateness (Visual convenience)	A sign language interpreter is positioned near the speaker.
		Screen size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No visual obstructive factor exists.

본 고에서는 공공수어통역의 공공성 기준으로 민현식 외 (2010)가 제시한 기준을 준용하여 ‘정확성’, ‘소통성’을 제시하였다. 서은아(2011)의 기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항목 중에 공공수어통역에서는 비교적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적절성’을 제외한 다른 기준도 참고하였다.

‘정확성’은 ‘표현의 정확성’과 ‘문법의 정확성’을 뜻한다. ‘표현의 정확성’ 항목은 ‘수어 어휘, 지문자, 지숫자의 형태를 정확하게 발화한다.’, ‘농사회에서 보편화된 수어 어휘를 사용한다.’, ‘휴지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를 제시하였다. ‘문법의 정확성’ 항목은 ‘공간 활용을 통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비수지기호를 적절히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를 제시하였다.

‘소통성’은 ‘공공성’과 ‘적절성’ 두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공성’ 항목은 ‘한국수어를 사용한다.’, ‘외국수어 및 국제수화 사용은 삼간다.’,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 등)을 삼간다.’, ‘중요한 정보의 누락을 삼간다.’로 제시하였다. ‘적절성’은 시각적 편의를 뜻한다. ‘적절성’ 항목은 ‘수어통역사가 화자 가까이 위치한다.’, ‘수어통역 화면 크기가 적절하다.’, ‘시각적으로 방해되는 요소가 없다.’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정확성’과 관련하여 민현식 외(2010, P. 280)는 “정확성은 모든 장르의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정확성’에서 제시한 항목들은 한국수어의 표현과 문법에 관련된 것이다. ‘표현의 정확성’에서 제시한 항목들은 수어를 발화할 때 수어의 형태를 정확히 표현하고, 적절한 휴지를 통해 주어와 문장의 종결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농인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또한 ‘농사회에서 보편화된 수어 어휘를 사용한다’는 농사회에서 소수만 사용해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 수어 표현이나 특정 집단 또는 계층만 사용하는 표현 등이 공공수어통역의 전달력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된 항목이다. 한국수어의 문법에 대하여 허일(2019, p. 9-10, 25)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수어는 음성을 표현양식으로 사용하는 영어나 한국어와 달리 손과 신체, 얼굴과 함께 공간을 활용해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언어다. 즉 한국수어는 의미와 문법 정보가 달라지면, 음성언어에서 음성에 변화가 있듯이 손에 담긴 정보나 비수지표지\*(non-manual marking), 공간 정보 등 시각요소가 달라진다. ... (중략)...

시각언어인 한국수어 문법에 따라(공간활용 및 동시성, 도상성, 분류사 등) 한국수어 문장을 구성하고 표현한다. 특히 한국수어는 다중층위 언어(Multi-tier language)로서, 한국어 동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한국수어 동사의 특성이 반영된 한국수어 문장을 표현한다.”

“한국수어에서 나타나는 비수지표지의 역할에는 1)감정표현(reflections of emotional states) 2)구성된 행동(constructed action) 3) 대화 규제(conversation regulators) 4) 기능어(문법표지 grammatical markers) 5) 형태소(lexical) 6)수식어(modifiers such as adverbs) 기능이 있다.”

따라서 공간 활용, 비수지 기호 등은 수어통역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의미 정보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농인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공공수어통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소통성’ 항목은 민현식 외(2010)가 제시한 <표 4>의

\* 해당 용어는 비수지기호, 비수지신호, 비수지표지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공공성’, 서은아(2011)가 제시한 방송언어의 공공성 기준의 ‘적절성’, ‘용이성’ 항목 중 일부를 적용하였다. ‘소통성’의 하위 요소인 ‘공공성’은 한국어로 출발하는 원문 정보가 한국수어로 산출될 때 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언어 사용에서 쉽고 정확한 언어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어를 사용한다.’ 항목은 공공수어 통역에서 수지한국어가 사용된다면 농인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에도 수지한국어 통역이 당위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다. 공공수어통역의 파급력과 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수지한국어 사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한국수어에 기반한 공공수어통역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칠관·윤병천(2011)은 우리나라의 수어통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시통역에서 축어역\*\* 형태의 수어통역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중요한 정보의 누락을 삼간다.’는 공공수어통역이 동시통역임을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음성언어로 출발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동시통역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보의 누락도 없이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의 농인들에게 전달되는 공적인 정보에서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에 비하여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에서 초기에는 확진자 수가 중요한 정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 두기 단계 등이 더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시간적 제약 속에서 수어통역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정보인가에 대해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정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적절성’ 요소의 시각적 편의는 민현식 외가 제시한 <표 4>의 ‘소통성’ 영역 중 ‘용이성’ 항목에서 제시한 ‘시각적 편의’를 적용하였다. 다만 문어를 대상으로 한 기준의 ‘시각적 편의’와 수어에 적용될 ‘시각적 편의’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현식 외(2010)는 공공언어에서 ‘시각적 편의’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고 눈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글을 잘못 읽을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시각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공공수어통역에서 ‘시각적 편의’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시각적 편의’는 공공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연관된다. 공공수어통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품질이 좋은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관의 책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어통역사의 위치를 화자와 멀리 배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농인들이 화자의 비언어적 정보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수어통역사가 화자 가까이 위치한다.’를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수어통역에서 화자의 비언어적 정보가 농인에게 중요한 의미 정보를

\*\* 수어통역에서 축어역은 한국어 문법에 기초하여 한국어 어순 그대로 수어 단어만 치환하여 하는 통역을 뜻한다.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수어는 시각적으로 인지되므로 송출 화면의 크기가 작거나 시각적인 방해 요소가 있으면 의미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어통역 화면 크기가 적절하다.’, ‘시각적으로 방해되는 요소가 없다.’ 를 제시하였다.

공공성 기준의 항목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수어는 시각·동작 체계의 언어로 불필요한 산출은 보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된다. 과도한 비수지기호의 사용이나 불필요한 수어의 반복,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는 개인적인 습관 등도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수어통역 시행 초기에 공공수어통역 품질 점검단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 외에도 후속 연구를 통해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된다면 ‘불필요한 간접인용형을 삼간다’ 등의 기준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근거는 송미연·강창욱(2017)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미연·강창욱(2017)은 방송 수어통역에서 수어 어휘인 <Figure 1>의 수어인 [말하다]가 문장의 종결을 위한 표현으로 자주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어휘는 간접인용형의 표현으로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한 말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수어 어휘이다.



<Figure 1> 'speech'

Source: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

수어통역사가 발화자의 말을 1인칭으로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역 말미에 [말하다]를 덧붙이면 통역을 보는 농인들은 발화자가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말로 이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송미연·강창욱(2017)은 해당 수어가 청인이 연설 또는 강의를 할 때 시간을 벌고자 사용하는 ‘음~’, ‘어~’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어의 정확한 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는 지위를 가진 한국수어가 한국수화언어법의

시행으로 공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공공수어통역이 공공언어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수어통역의 정의, 범위 그리고 공공수어통역의 공공성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공공수어통역은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정부 주요 정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과 주체, 대상 3가지 요건에서 공공언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공수어통역을 ‘불특정 다수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정보의 수어통역 및 수어번역’ 이라고 정의하고 공공수어통역의 생산 주체에 따라 범위와 유형을 제시하였다. 생산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방송계, 교육계, 학계, 장애계로 구분하였다. 교육계와 학계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농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고려한 결과이다.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과정에서 농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농교육의 개선이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같은 법 제11조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학교는 수지한국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학생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농학교는 수어와 농문화의 산실과 같은 곳으로 한국수어의 전승에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수어통역 및 수어 번역, 국립국어원 학술대회 수어통역, 한국어 자료의 수어번역, 한국수어 자료의 한국어 번역으로 제시하였다. 방송계는 방송에서 제공되는 방송 수어통역 및 수어 번역, 교육계는 농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의 수어통역 및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자료의 수어 번역, 학계는 학술대회 수어통역, 학술지 및 관련 자료 수어번역, 장애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유관 단체 등의 행사 수어통역, 농민과 관련된 자료의 수어번역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농민의 언어권 확보 차원에서 농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수어통역의 공공성 기준은 정확성과 소통성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정확성은 표현의 정확성과 문법의 정확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을 제시하였고 소통성은 공공성과 적절성(시각적 편의)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공수어통역을 하는 수어통역사들에게 사전에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브리핑 원고를 제공하는 등 다른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수어통역에 대한 국내 첫 연구로 향후 공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공공수어통역에 대한 범위와 공공성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수어통역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공공성 기준으로 제시된 각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법의 정확성’이라는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어 문법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더 규명되어야 한다. 한국수어의 학문적 연구가 미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고에서 제시한 공공성 기준을 활용하여 적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배(2016)도 수어학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지용·김미선(2017)은 공공언어 정책과 사업의 주체가 언중이어야 하고 공공언어 정책이 국가 기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공공수어통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공공수어통역의 주체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아니라 공공수어통역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농인들이 되어야 하고 농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야 하며 농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농인 사회에서도 공공수어통역을 통역 형식이 아니라 농인 당사자가 직접 보도하는 형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농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대통령의 말’은 사후 녹화로 진행되며 농인 당사자가 수어로 번역을 하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이처럼 농인 당사자가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어는 공공언어로서 관리 및 실태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는 공공수어통역의 품질에 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실태와 관리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성이 높은 공공수어통역의 제공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수어책임관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수화언어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어 기반의 공공언어 확장에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시작으로 공공수어통역을 통한 농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Bak, J. H. (2020). A Review of “Public Language Policy in Korean. *Cogito*, 91, 175-202.  
[박재희 (2020). 현행 공공언어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 *코기토*, 91, 175-202.]
- Cho, T. R. (2010). The way of intervention policy on public language problems. *Korean Language Research*, 27, 379-405.  
[조태린 (2010).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 27, 379-405.]

- Choe, S. B. (2016). *A Study on the Contents and Methods of Korea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Evaluatio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Research Institut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37-146.  
[최상배 (2016). **한국수어 통역평가의 내용과 방법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학술대회, 137-146.]
- Gim, C. G., & Yun, B. C.(2011).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Yangseowon Press.  
[김철관, 윤병천 (2011). **수화통역학개론**, 양서원.]
- Gim, H. S. (2011). Criteria for Public Language in Broadcasting. *Journal of Bangyo Language and Literature, 30*, 37-59.  
[김한샘 (2011). 방송언어의 공공성 진단 기준. **반교어문연구, 30**, 37-59.]
- Heo, I. (2019). *A sourcebook for special lectures on grammar of Korean sign language*. Seoul Korean Language Professional Institute.  
[허일 (2019). **한국수어문법 특강 자료집**, 서울수어전문교육원.]
-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 Retrieved on April 30, 202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sldict.korean.go.kr/front/sign/signContentsView.do?origin\\_no=6135&top\\_category=CTE&category=&searchKeyword=말하다&searchCondition=&search\\_gubun=&museum\\_type=00&current\\_pos\\_index=0](https://sldict.korean.go.kr/front/sign/signContentsView.do?origin_no=6135&top_category=CTE&category=&searchKeyword=말하다&searchCondition=&search_gubun=&museum_type=00&current_pos_index=0)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sign/signContentsView.do?origin\\_no=6135&top\\_category=CTE&category=&searchKeyword=말하다&searchCondition=&search\\_gubun=&museum\\_type=00&current\\_pos\\_index=0](https://sldict.korean.go.kr/front/sign/signContentsView.do?origin_no=6135&top_category=CTE&category=&searchKeyword=말하다&searchCondition=&search_gubun=&museum_type=00&current_pos_index=0) 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 Kwon, M. Y., & Shin, E. H. (2019). Cultural Asset Guides and Public Language: A Study on the Public Language Wse of the Cultural Asset Guides in Jung-gu, Incheon. *The Journal of Incheon Studies, 30*, 179-230.  
[권미영, 신연호 (2019). 문화재 안내문과 공공언어-인천광역시 중구의 문화재 안내문 분석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30**, 179-230.]
- Lee, G. Y. (2021). *Limitations of a discourse on 'easy public language' and educational expansion of its grammar from a collection of academic articles published*. Korean Grammar Education Circle, 177-191.  
[이기연 (2021). **'쉬운 공공언어' 담론의 한계와 문법교육적 확장**.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77-191.]
- Lee, H. J. (2020). French administrative language policies and laws : endless quests towards civility and language rights. *Lingua Humanitatis, 22(2)*, 305-338.  
[이현주 (2020). 프랑스의 공공언어 정책: 시민성과 언어권을 향하여. **인문언어, 22(2)**, 305-338.]
- Lee, J. Y., & Kim, M. S.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 Accuracy Diagnosis Criteria in Public Language. *The Review of Korean Cultural Studies, 62(62)*, 105-138.  
[이지용, 김미선 (2018). 공공언어 정확성 진단 기준의 개선 방안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62(62)** 105-138.]
- Min, H. S. (2020). Problems and realistic improvement plans of public language —a way to regenerate public language—. *oesolhoe, narasarang, 130*, 45-118.

- [민현식 (2020). 공공언어의 문제점과 현실적 개선 방안 -공공언어 갱생의 도-. *외솔회. 나라사랑*, 130, 45-118.]
- Min, H. S., Kim, H. J., Park, J. H., Ju, S. H., & Kang, N. U. (2010). *A Study on Requirements of Public Language and Diagnosis Criteria Development*.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민현식, 김호정, 박재현, 주세형, 강남옥 (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Min, U. J. (2013). An Case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Coordinating Evaluation Standards among Evaluators in Relation to Educationa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4(4), 147-162.
- [민은주 (2013). 교육수화 통역의 평가자간 평가기준 조율 가능성에 대한 사례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4(4), 147-162.]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2020 Korean Sign Language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2021 Korean Sign Language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
-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rean Law Intormation Center. Retrieved on April 28, 202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한국수화언어법#undefined>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수화언어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한국수화언어법#undefined> 에서 2022년 4월 28일 인출.
-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rean Law Intormation Center. Retrieved on April 30, 202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에서 4월 30일 인출.
-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rean Law Intormation Center. Retrieved on April 30, 202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5%EC%95%A0%EC%9D%B8%EB%B0%A9%EC%86%A1#liBgcolo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5%EC%95%A0%EC%9D%B8%EB%B0%A9%EC%86%A1#liBgcolor> 에서 4월 30일 인출.

Seo, E. A. (2011). The Study on the Standard of Public Interest in Broadcasting Language. *Journal of Korean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47*, 91-116.

[서은아 (2011). 방송언어의 공공성 기준에 관한 연구. *겨레어문학, 47*, 91-116.]

Sin, M. S., Gang, B. S., & Lee, G. Y. (2016). An Examination of Student Perception of Press Releases.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37*, 137-195.

[신명선, 강보선, 이기연 (2016). 보도자료에 대한 이해도 조사. *국어교육연구, 37*, 137-195.]

Song, M. Y., & Kang, C. W. (2017). The Analysis of Performance Methods of Categories of TV News Sentences i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Broadcasting.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8(4)*, 51-75.

[송미연, 강창욱 (2017). TV뉴스 문장의 문법 범주에 대한 수어통역방송에서의 실현 방식 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8(4)*, 51-75.]

<국문 초록>

## 공공수어통역의 범위와 공공성 기준에 관한 연구

이 현 화 · 이 미 혜

**[목적]**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2019년에 시작된 공공수어통역이 4년여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언어 측면에서 접근한 공공수어통역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공공수어통역이 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수어통역의 범위와 공공성의 기준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방법]** 이에 공공언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공공언어의 정의, 공공언어의 범주, 공공언어의 공공성 기준,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 등을 고찰하여 공공수어통역의 범위와 공공성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 공공수어통역은 “불특정 다수의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정보의 수어통역 및 수어번역”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공수어통역의 범위는 생산 주체별로 범위와 유형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정보의 수어통역 및 수어번역, 방송계는 방송의 수어통역 및 수어번역, 교육계는 농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의 수어통역과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자료의 수어 번역, 학계는 학술대회의 수어통역, 학술지 및 관련 자료의 수어번역, 장애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유관 단체 등의 행사 수어통역, 농인과 관련된 자료의 수어 번역으로 제시하였다. 공공성의 기준은 ‘정확성’, ‘소통성’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한국수어의 공간활용, 비수지기호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한국어로 출발하여 동시통역으로 한국수어로 산출하는 공공수어통역의 특성도 고려하였다. 적절성의 ‘시각적 편의’는 공공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관련된 항목으로 시각적으로 언어를 인지하고 소통하는 농인들의 언어 사용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수어통역을 제공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구성하였다. **[결론]** 공공성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한국수어의 실체가 더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수어통역에 대한 후속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 농인의 정보 접근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수어, 농인, 공공언어, 공공수어통역, 공공성 기준

논문 접수(Received): 2022. 05. 11. / 심사 시작(Examined): 2022. 05. 11. / 게재 확정(Accepted): 2022. 07. 12.

<붙임>

<표 3> 공공수어통역의 범위

생산 주체	범위	유형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수어통역 및 수어 번역	대국민 담화, 정책 발표, 누리집, 기관장 인사말, 기자회견, 연설, 공고문, 법령문, 선거공보물 등
	국립국어원 학술대회의 수어통역, 한국어 자료의 수어번역, 한국수어 자료의 한국어 번역	학술대회, 주요 한국어 자료 및 한국수어 자료 등
방송계	방송에서 제공되는 방송 수어통역 및 수어 번역	방송 프로그램,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공익 광고 등
교육계	농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의 수어통역 및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자료의 수어 번역	수업, 교과서, 교육 자료, 시험 문제 등
학계	학술대회의 수어통역, 학술지 및 관련 자료 수어번역	학술대회, 학술지, 전문서적 등
장애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유관 단체 등의 행사 수어통역, 농인과 관련된 자료의 수어번역	주요 행사, 공청회, 세미나, 농인 관련 자료 등

<표 6> 공공수어통역의 공공성 기준

기준	요소	항목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	수어 어휘, 지문자, 지숫자의 형태를 정확하게 발화한다.
		농사회에서 보편화된 수어 어휘를 사용한다.
		휴지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문법의 정확성	공간 활용을 통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비수지기호를 적절히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소통성	공공성	한국수어를 사용한다.
		외국수어 및 국제수화 사용은 삼간다.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 등)을 삼간다.
		중요한 정보의 누락을 삼간다.
	적절성 (시각적 편의)	수어통역사가 화자 가까이 위치한다.
		수어통역 화면 크기가 적절하다.
	시각적으로 방해되는 요소가 없다.	